

「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8월 4일
중 소 기 업 청 장

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- 국내 지식재산 창출능력은 우수하나 보호·활용능력은 미흡한 실정
- 특히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지식재산이 사장되거나 침해 당하는 사례 다수
- 중소기업 지식재산을 가치화하는 프로젝트에 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의 투자를 허용하여 중소기업 우수 지식재산의 보호 및 거래 활성화 유도

2. 주요내용

- 프로젝트 투자범위에 '산업재산권의 창출·매입·활용'을 추가

< 신구조문 대비표 >

현 행	개정(안)
제7조의2(프로젝트 투자) ① (생략) 1. ~ 8. (생략) < 신 설 >	제7조의2(프로젝트 투자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8. (현행과 같음) 9. 발명진흥법에 의한 산업재산권의 창출·매입·활용
10. (생략)	10. (현행 제9호와 같음)

3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

4. 의견제출

-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고시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(벤처투자과)에 방문,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

- ※ 보내실 곳 :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
벤처투자과(☎ 042-481-4488)
전자우편 : kch777@smba.go.kr